

제5조 (해석)

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협약서의 조문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6조 (기간)

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,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어느 일방이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.

제7조 (기타사항)

본 협약서에 명시된 협약사항의 실행과 관련하여 실행시점에서 양 기관 중 내부 사정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협력이 불가능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협약사항의 실행을 조정할 수 있다.

본 협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정을 증빙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후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하며, 각각은 원본의 효력을 가진다.

2009년 6월 30일

대구대학교
총장 이 용 두

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
원장 차 순 도

업무협력 협약서

대구대학교 -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

대구대학교와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(이하 “양 기관”)은 임상실습, 교육, 연구, 기타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대구대학교와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이 산·학 협력 협약을 통한 각종 상호교류 및 상호신뢰의 정신을 바탕으로 양 기관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 의료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신의성실의 의무)

대구대학교와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은 협약의 책임과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며, 협약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한다.

제3조(업무협약내용)

본 협약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양 기관의 상호발전 및 협력 활성화에 관한 제반사항에 적용된다.

1. (임상실습) 의료관련 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
2. (인적교류) 교원 및 학생 교류 등
3. (산학연계) 산학 컨소시엄 및 각종 산학교류
4. (공동장비사용) 의료관련 공동장비 활용